



기업장례서비스 1위기업 해피엔딩



사망관련 행정처리절차 매뉴얼



H해피엔딩

이 행정처리 절차 매뉴얼은 해피엔딩 고객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메모리얼노트)”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4 금강빌딩 4층 / 대표전화 1600-4401 / www.happy-ending.co.kr



사망관련 행정처리 목록

해야 할 일 들	신고기한	접수기관	관계기관
1. 사망자 화장 및 매장신고			
▷ 화장신고	화장하기 전에 신고	화장장	시, 군, 구청
▷ 매장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	시, 도청
2.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읍, 면, 동 주민센터	시, 도청
3. 사망자 재산조회			
▷ 금융재산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토지소유 조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4. 사망자의 재산상속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대법원
▷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대법원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대법원
▷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대법원
▷ 상속재산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5.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개시 3개월 이내	자동차 등록관청	국토해양부
6. 상속관련 세금 신고			
▷ 취득세, 등록세 신고	상속개시 6개월 이내	관할 시, 군, 구청	행정안전부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내	관할 세무서	국세청
7. 국민연금 청구	지급사유일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8. 상속예금 청구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9. 보험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2년내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1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	시, 군, 구청	행정안전부
▷ 식품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	허가(신고)기관	보건복지부
▷ 주요업종 지위승계 신고	페이지 참조	허가(등록,신고)기관	허가(등록,신고)기관
1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상속이 확정되는 때	관할 세무서	국세청
12. 기타 사망자명의 해지 신고			
▷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지역방송 등 사망자명의 계약 해지	거래계약 약관참조	해당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꼭 알아야 할 사항

1. 본 자료는 2015년 기준으로 향후 법령, 제도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장 및 매장신고

■ 화장신고

○ 개 요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화장장 신고가능)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신고방법

▷ 시신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
-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읍, 면, 동장의 확인서 제출

▷ 사태, 개장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제출
- 사태(死胎)란 : 배 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태아(胎兒)
- 태아(胎兒) : 16주 미만(병원 이용), 16주 이상(화장시설 이용), 7개월 이상 사산아(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 화장신고 위반시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매장신고(개인묘지)

○ 개 요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매장신고방법

▷ 묘지설치신고서(읍, 명, 동 주민센터 비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 매장신고 위반시 동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설치기준

▷ 묘지면적 : 30㎡ 이내로 제한

▷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에서 2m 이내, 표면적 3㎡ 이내), 상석 1개,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을 설치할 수 있음

▷ 묘지형태 : 봉분의 높이는 지면에서 1m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cm 이내로 설치

도와주는 곳

해피엔딩 / 상담전화 1600-4401 / www.happy-ending.co.kr

2. 사망신고

○ 신고기관

-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동거자 등 세대를 같이 하는 자
- ▷ 사망신고자 외 대리할 수 없음.
- ▷ 단, 병원, 교도소, 기타시설에서 사망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 ▷ 신고의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 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각 군 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첨부

○ 사망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 사망신고서에 사망자 이름, 성별, 주민번호, 사망시기, 사망장소 등 기재하여야 함
- ▷ 사망시기는 재산 상속 등의 효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간을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지 아니함

도와주는 곳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

3. 사망자의 재산조회

1) 금융재산조회

○개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 지원), 국민은행(영업점), 농업협동조합 지점 및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센터, 우리은행 영업점, 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

○조회대상 및 범위

▷ 조회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 조회대상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방문)
▷ 신청서는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결과통보

도와주는 곳

금융민원센터 / 통합콜센터 1332 / www.fcsc.kr 상속인 조회안내

2) 토지소유조회

○개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http://ngii.go.kr>)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소유한 토지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접수기관

- ▷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사망일 1975. 7. 25 이후)
국토교통부 또는 시, 도 및 시, 군, 구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사망일 1975. 7. 25 이전)
사망자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 도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인

-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 신청서는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첨부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의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일자 등 확인 후 적격여부 판단
- ▷ 지적전산 자료를 검색하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소유현황 확인 및 제공

○정보보호

- ▷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함
-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도와주는 곳

국토지리정보원 / 상담전화 031-210-2600 / www.ngii.go.kr

4. 사망자의 재산상속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개 요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구비서류

- ▷ 유임장
 - 등기신청을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신청서부분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분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
 - 시, 군, 구 등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각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첨부
- ▷ 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 기타 아래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

도와주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 www.klac.or.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2)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개요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정한 서식 없이 비정형 양식 이용

○구비서류

- ▷ 유입장
 - 등기신청을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각 자의 서명, 간인, 날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심판에 의한 경우 심판서 정본 첨부
- ▷ 신청서부분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분
- ▷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
 - 시, 군, 구 등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각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
-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첨부
- ▷ 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 기타 아래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

도와주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 www.klac.or.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개 요

유증은 피상속인인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공동신청, 단독신청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 ※ 단독신청의 경우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함
-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 구비서류

- ▷ 유입장
 - 등기신청을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유언증서 등
 -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첨부
 -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 유언검인조서등본
 -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 등본을 첨부
- ▷ 신청서부분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분
- ▷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
 - 시, 군, 구 등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
-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기타 아래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등

도와주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 www.klac.or.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4)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개요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 상속등기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 신청인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 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구비서류

- ▷ 유입장
 - 등기신청을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신청서부분
 -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분
- ▷ 등기필증
 - 등기소유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 받은 등기필증
- ▷ 상속재산분할협약서 또는 심판서 정보
 - 상속재산분할협약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각 자의 서명, 간인, 날인
 - 상속재산분할협약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심판에 의한 경우 심판서 정보 첨부
- ▷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
 - 시, 군, 구 등으로부터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등록세 영수증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각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
- ▷ 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 기타 아래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정보 첨부 등

도와주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 www.klac.or.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5) 상속재산의 상속포기 / 한정승인 청구

○ 개 요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 하는 것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상속방법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가 없으면 승인하는 것으로 봄

○ 청구기관 및 청구인

▷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상속인

▷ 청구양식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자주 이용하는 양식 → 가사재판

○ 청구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제1항)

※ 3개월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경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 할 수 있음

○ 청구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첨부

- 단,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제출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제출

▷ 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포기 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
- 상속재산 목록

도와주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 www.klac.or.kr

서울가정법원 / 상담전화 02-530-2462~3 / <http://slfamily.scourt.go.kr>

5.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신청기관 및 신청인

- ▷ 신청기관 : 상속인 주민등록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한 및 과태료

-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
-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부과방법
 -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마다 1일당 1만원 과태료 부과(최고 50만원 부과)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등록관청에 비치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정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같음
 -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의 지하철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도와주는 곳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자동차등록사업소)

6. 상속세신고

1) 취득세, 등록세 신고

○개요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 군, 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관 및 납세의무자

- ▷ 신고기관 :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 ▷ 납세의무자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신고대상물건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 취득세 비과세 물건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납부기한

-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단,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받기 전에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액 +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일 3/10,000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 첨부
-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도와주는 곳

각 시, 군, 구 부과권자 / 지방세 종합상담 1577-5700 / www.wetax.go.kr

2) 상속세 신고

○개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관서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관 및 납세의무자

▷ 신고기관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세의무자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수유자 :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한 자

○신고대상물건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

▷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

※ 상속재산 : 부동산, 현금, 예금, 퇴직금, 보험금, 주식, 서화 등

단, 채무, 공과금, 조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국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

※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무신고(과소신고)

-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 일반무신고(과소) 가산세 : 일반무신고(과소)분 산출세액 × 20%(10%)

- 부당무신고(과소) 가산세 : 부당무신고(과소)분 산출세액 × 40%(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납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 고지일까지의 기간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그 평가 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7. 국민연금 청구

1) 국민연금 청구방법

○ 연금종류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례보조금 성격의 급여

○ 청구기관 및 청구자격

- ▷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서나 방문하여 청구 가능
- ▷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다음 페이지 수급대상자 참조)

○ 청구기한

-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 단,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신청시

- 신분증(제시로 같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통장, 도장(서명가능) 제출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른 법상 유족보상금을 받은 경우(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또는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 제출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시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시

- 신분증(제시로 같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의 통장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도와주는 곳

국민연금관리공단 /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 / www.nps.or.kr

2) 국민연금 수급요건 및 대상자

○ 유족연금

▷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내, 초진일로부터 2년내 사망한 경우

▷ 수급대상자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
- 3순위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부모
- 4순위 : 18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손자녀

○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 수급대상자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 함

○ 사망일시금

▷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도와주는 곳

국민연금공단 /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8. 상속예금 청구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이며,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안 경우 지급 정지한 후 상속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상속예금의 청구방법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 공동상속 전원이 연서 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등
- *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하여 청구 하는 경우

-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 상속재산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판결문 정보, 판결확인 증명원,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 특수한 경우 상속예금 청구방법

▷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 국적유지자 :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처리
- 국적상실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으로 처리

▷ 예금주의 실종,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 예금주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절차 진행
- 예금주가 행방불명 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권을 가짐

▷ 상속인 중 교도소 수감자가 있는 경우

-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으로 처리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상속절차 진행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한 후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절차 진행

도와주는 곳

사망자 명의의 상속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 문의

9. 보험금 청구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로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 계약자 : 계약의 당사자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수령권한이 있음
- ▷ 피보험자 : 보험의 객체로서 생명 또는 신체를 담보한 자 (생명보험의 경우)
-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이 있음 (생명보험의 경우)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방법
 -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
 -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 구비서류
 - 보험계약변경(해약)신청서(보험사 비치)
 -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 상속인 전원 날인), 인감증명서(전원), 대표 계약자 신분증
 - *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방법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보험수익자가 청구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보험사 비치)
 - 피보험자의 사망사실과 원인을 알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수익자 신분증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와 위임장(대표 수익자 지정, 상속인 전원 날인), 인감증명서(전원),
대표 수익자 신분증
 - *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가능
-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 상속
- ▷ 법정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위와 동일함

도와주는 곳

사망자 명의의 보험이 가입된 해당 보험회사 문의

1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 개 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에 의거 공중위생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신고대상업종 및 신고방법

- ▷ 신고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업(청소대행 등)
- ▷ 신고기관 : 시, 도 또는 시, 군, 구청
- ▷ 신고절차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 군, 구를 방문하여 신고

○ 신고기한 및 처리기한

-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한 : 즉시
- ※ 동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 구비서류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시, 군, 구청 비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지위승계 결격사유

- ▷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
- ▷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 ▷ 동 법을 위반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도와주는 곳

관할 시, 도 또는 시, 군, 구 공중위생 담당부서 문의

2)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 개 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신고대상업종 및 신고방법

- ▷ 신고대상업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식품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
- ▷ 신고기관 : 당초 허가, 신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 군, 구청 등)
- ▷ 신고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군, 구를 방문하여 신고

○ 신고기한 및 처리기한

-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한 : 즉시
- * 동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77조 제1항)

○ 구비서류

- ▷ 신고서 서식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 군, 구청 비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도와주는 곳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관할 시, 군, 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문의

3) 주요 지위승계 신고업종 / 접수기관 / 처리기간

신고기한	신고업종	접수기관	처리기간
권리의무 승계일로 부터 30일 이내	국제물류 주선업 지위승계 신고	시,도	2일
승계사유발생일로 부터 20일 이내	게임제작(배급)업 등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즉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광업권(조광권, 저당권) 지위승계 신고	광업등록사업소	1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지위승계 신고	시,도(가공업) 시,군,구(판매업) 국립수의과학지원 (수입판매업)	3일
	측량업 지위승계 신고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10일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시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경제부(도매업) 시,도(소매업)	4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지위승계	시,도,시,군,구	4일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	소방서	즉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시,도지사	10일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기능식품업 지위승계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즉시
	총포 등 제조,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경찰서	즉시
	사행행위기구제조, 판매업 지위승계	지방경찰청, 경찰서	5일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시, 군,구	업종별 2~7일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위승계 신고	국토교통부,시,군,구	5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업 지위승계 신고	시,도(일반건설업) 시,군,구(전문건설업)	7일
	부동산 개발업 지위승계 신고	시,도	7일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위승계 신고	시,도	2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업) 지위승계 신고	국토교통부(시외고속 버스) 시,군,구(외)	5일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골프채취업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7일
지체 없이	주류 제조, 판매업 면허 지위승계 신고	세무서	7일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표류판매소 지위승계 신고	우체국	2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수면 유,도선사업 지위승계 신고	해양경찰청, 시,도 해양경찰서, 시,군,구	7일

11.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 개 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 ▷ 신고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신고절차 : 사업을 지위 승계한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기한 및 처리기한

- ▷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는 지체 없이 신고(통상 3개월)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즉시 혹은 3일
-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세무서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도와주는 곳

사업장 관할 세무서 문의

12. 기타 가족들이 해야 할 일

-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장례비용 공제 최대 1,500만원 (500만원 초과시 장례비용 증빙서류 제출)
- ▷ 신용카드 해지
- ▷ 휴대전화 해지
- ▷ 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 ▷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 ▷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 ▷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변경 및 해지
- ▷ 고인의 유품정리 등

이에 관하여 각 업체에 따라 조치기한과 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업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딩

copyright©2015happyending

이 행정처리 절차 매뉴얼은 해피엔딩 고객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메모리얼노트)”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4 금강빌딩 4층 / 대표전화 1600-4401 / www.happy-ending.co.kr